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1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3617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장
제1심 판결	[redacted]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6구합8154 판결
변 론 종 결	2017. 6. 7.
판 결 선 고	2017. 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6,291,450원, 지방교육세 1,417,660원의 합계 17,709,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21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빈

판사 박재우

판사 정승규